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5년 8월 24일 윤은희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재단 존립의 근거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안 제1조)
- 재단의 목적사업에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 관광사업 수행 근거 마련(안 제5조)
- 재단 임원 정수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규정하고, 임원의 임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하도록 함(안 제6조)

- 사무국을 사무처로 변경함(안 제7조)
-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3월말까지 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4조 등)

####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재단준립 근거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안 제1조), 재단의 목적사업에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 관광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5조), 재단 임원 정수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규정하고, 임원의 임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며(안 제6조), 사무국을 사무처로 변경하고(안 제7조),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3월말까지 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며(안 제12조, 제13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4조 등)를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